

■ 치과 칼럼

갑자기 시린 치아, 방치하다 큰코다친다



일상생활에서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던 중 갑작스레 치아가 시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럴 때 보통 겨울의 추운 날씨 탓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충치, 균열, 마모 등의 문제가 생겨 발생한 증상일 수 있으니 치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를 살펴보면, 겉면은 단단한 법랑질이 감싸고 있고 내부는 상아질과 제일 안쪽의 신경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랑질이 마모될 경우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되게 되는데 법랑질보다 경도가 낮은 만큼 마모가 빨리 진행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안쪽의 신경에 전달돼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시린 이는 '치경부 마모증' 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 목 부분에 해당하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 V 자 모양으로 홈이 생기는 증상이다. 쉽게 말해 잇몸 경계 부분의 치아 표면이 닳아 패이게 되는데 냉온 자극에 예민한 치아의 파인 곳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선 잠잘 때 이를 갈거나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씹는 경우다. 이럴 때 강한 힘이 치경부에 전달돼 손상이 일어나 마모가 진행될 수 있다.

과도한 칫솔질도 원인으로 꼽는다. 초기 증상이 있다면 솔이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고 칫솔질 할 때는 칫솔 잡은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돌리며 치아를 닦는 회전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 과일주스 등 산성을 띄는 음료의 잦은 섭취,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구토나 위장장애 등 위액과 자주 접촉하는 경우 산으로 인해 치아의 조직이 닳아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마모 원인과 마모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마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후 다시 마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파인 부분을 레진으로 메워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마모로 파인 곳을 방치하면 그곳에 충치가 생기기 쉽다. 또 마모증이 심하게 진행되면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치아가 많이 닳아 조직이 노출되는 등 치경부 손상이 심한 경우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을 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Micheal Han D.D.S
Star 28 Dental Clinic
TEL (714) 523-2828
goteamhcd@gmail.com



■ 법률 칼럼

바이든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안 (Citizenship Act of 2021)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법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디까지나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법안' 이며 상하 양원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다음 사항은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단지 제안된 법안입니다.

법안의 기본 골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해 오고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을 경과후 1) 범죄/국가안보관련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2) 5년간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부여하고, 3년 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을 컷오프 데이트로 제시한 것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규모 사면을 노리고 미국으로 행진해 오고 있는 중남미 난민들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년 1월 2일 이후에 입국하는 불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Felonies)들도 구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세 이전에 부모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DACA수혜자들), 중미 출신 이재민들로 TPS(임시적 보호 신분: Temporarily Protected Status)들은 임시비자라는 중간 단계 없

이 즉각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은 결국 바이든 이민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8년에 걸쳐 합법 신분 임시비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하 양원에서 토의/표결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구제안 외에 다른 주목할 만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현재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 3년간 미국 입국 금지 그리고 1년 이상 불체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 금지를 규정하고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폐지
- 2) 가족 초청 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 체류 신분 부여

구체적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타운뉴스DB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